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서

한국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2026년 10월 · 2기 예정분

10월 초 국세청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시면 **10월 23일(금)**까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종 판단은 세무서).

1.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눠 신고합니다. 하반기분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10월에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해 건넵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이며, 신고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발송됩니다.

사업자 유형	10월에 하실 일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대로 납부 (상반기 납부세액의 50%)
법인 — 상반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개인과 같이 고지서대로 납부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고지서 없음.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부과·1월 확정신고로 납부하며 10월 납부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해당 없음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즉 상반기 납부세액이 약 10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7월 1일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도 고지하지 않습니다.

2. 낸 금액은 어떻게 공제되나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 때 하반기 전체 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예시	금액
2026년 상반기 납부세액	3,000,000원
10월 예정고지 (50%) — 10월 26일까지 납부	1,500,000원
하반기(7~12월) 실제 납부세액	3,200,000원
1월 확정신고 때 더 낼 금액 = 3,200,000 - 1,500,000	1,700,000원

하반기 실적이 줄어 실제 세액이 이미 낸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1월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3. 고지 금액 확인과 납부

- 1. 홈택스 첫 화면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누릅니다.
- 2.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3. 조회 결과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지만 카드사 할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4.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부가가치세에는 소득세·법인세처럼 신고만으로 나눠 내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나눠 내시려면 세무서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연장에 분할납부가 포함됩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② 실적으로 예정신고
이런 경우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에 손실이 나서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법: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재난·도난,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등. 재난·질병이 없어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효과	최장 9개월 연장, 분납 횟수 신청 가능(최종 결정은 세무서). 연장 기간엔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승인되면 체납이 아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고, 7~9월 실적 기준 세액만 납부
기한	10월 23일(금)까지 신청 (기한 만료 3일 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
어디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청	홈택스 예정신고 (보통 세무사 사무실 진행)

5. 연장 신청 순서

1. 고지서의 과세기간(2026년 2기 예정)·세액·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연장이 필요한 이유(매출 감소, 손실, 치료 등)와 원하는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3. 나눠 내실 경우 몇 번에 얼마씩 낼지 신청서에 적습니다(최종 결정은 세무서).
4. 10월 23일(금)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세무서의 승인 통지를 확인합니다. 승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원래 기한이 유지되니, 통지가 없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승인 전에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입니다. 연장을 받은 뒤 분납을 한 번이라도 거르면 연장이 취소되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며 다시 연장할 수 없습니다.

6. 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 담보

세무서는 연장(분할납부)해 주는 금액만큼 **납세담보**(금전·국채 등 유가증권·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서·토지·보험 든 건물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실무 기준으로는 **연장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으면 담보 없이** 처리하고 있어, **7,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납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일부 업종(건설·제조·음식숙박·소매 등)과 수출기업은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이 한도를 **1억원**으로 넓힌 한시 특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 때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7.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는 연장 여부와 담보 면제를 판단할 때 과거 국세 납부 내역을 봅니다. 이미 체납이 있으면 담보를 요구받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정책자금과 보증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신청 전에 담당 세무사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저희 담당 컨설턴트에게도 알려 주세요.** 진행 중인 자금 일정에 맞춰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8.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확인 (개인사업자)

사업에 쓰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1월 확정신고 때 카드 매입분 부가세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1월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메뉴: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번거로우시면 카드사와 카드번호만 담당 컨설턴트에게 보내 주세요.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등록할 수 있는 카드 종류와 법인카드 처리, 사용내역 반영 시기는 홈택스 등록 화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접대비·개인 용도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제4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90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담보 면제 금액(7,000만원)은 법령이 아닌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실무 기준이며, 1억원 특례는 업계 보도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의 연장 승인과 담보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